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침 제483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관리 지침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생지원과), 02-970-6055

전부개정	2009. 1. 1.	개정	2010. 4. 1.	개정	2010. 7. 21.
개정	2010. 12. 29.	개정	2011. 6. 17.	개정	2011. 7. 27.
개정	2012. 2. 21.	개정	2012. 6. 1.	개정	2012. 8.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4. 4.	개정	2013. 7. 3.
개정	2013. 8. 1.	개정	2013. 11. 25.	개정	2014. 4. 1.
개정	2014. 10. 8.	개정	2015. 2. 11.	개정	2015. 11. 26.
개정	2016. 5. 26.	개정	2016. 7. 13.	개정	2016. 9. 1.
개정	2017. 2. 3.	개정	2017. 3. 2.	개정	2017. 6. 14.
개정	2017. 8. 22.	개정	2018. 3. 15.	개정	2018. 8. 9.
개정	2018. 12. 4.	전부개정	2019. 2. 15.	개정	2019. 3. 14.
개정	2019. 9. 18.	개정	2020. 2. 6.	개정	2020. 2. 28.
개정	2020. 8. 25.	개정	2020. 10. 28.	개정	2021. 3. 2.
개정	2021. 8. 9.	개정	2021. 9. 1.	전부개정	2021. 12. 6.
개정	2022. 8. 9.	개정	2022. 8. 30.	개정	2023. 2. 2.
개정	2023. 4. 18.	개정	2023. 7. 17.	개정	2023. 9. 14.
개정	2024. 7. 1.	개정	2024. 8. 1.	개정	2025. 7. 30.
개정	2026. 2. 4.	개정	2026. 8.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학금 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 중

인 학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장학금 구분) ① 장학금은 지원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창의장학금: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장학금
2. 실천장학금: 지식의 실제적 활용 능력을 갖춘 실천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장학금
3. 윤리장학금: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장학금
4. 복지장학금: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는 장학금

② 장학금은 지원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비감면 장학금: 해당 학생의 등록금 납부 범위 내에서 고지서상 선 면제 또는 선 감액하거나 부득이하게 기납부한 등록금액 자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2. 생활비지원 장학금: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가. 생활관(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지원금 등
   나. 대가성 장학금: ST근로장학금, ST인턴장학금, ST튜터장학금 등
   다.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라. 학생활동 지원 장학금
3. 명예선발장학: 장학금 지급 없이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장학수혜증명서상에 기록을 위하여 선발하는 장학 등

제4조(중복지원 제한) 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복지원이 허용되는 장학금이더라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원하는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

제2장 교내장학금

제1절 장학금의 종류

제5조(창의장학금) 창의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장학금: 본교와 외국대학 간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2. 삭제 <개정 2024. 7. 1.>
3. 마일리지장학금: 교내 필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에 기여 또는 대학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개정 2022. 8. 30.>
4. 삭제 <2022. 8. 9.>
5. 기타 교내 장학금: 교내 사업부서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6조(실천장학금) 실천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신입학 전형 시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3.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우수한 외국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 학생군사교육장학금: 계절학기 입영훈련에 참가하는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5. 미래호국장학금: 학군사관후보생의 학업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 <개정 2026. 2. 4.>

6. ST근로장학금: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하여 교내의 부서에서 근무하며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7. ST인턴장학금: 교내 부서에서 전공분야 또는 전문분야 인턴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8. ST튜터장학금: 타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튜터로 선정되어 튜터링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9. 공로장학금: 기술·체육·예능·외국어 분야 등의 국내외 각종 대회 및 전시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떨쳤거나 그 밖에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10. 삭제 <2023. 4. 18.>
11. 총장장학금: 모범적인 학생 및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중 학생처장이 추천을 하고, 총장이 그 공로를 인정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2. 현장실습장학금: 단기현장실습 및 장기현장실습(Co-op)프로그램,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3. 기타 교내 장학금: 교내 사업부서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7조(윤리장학금) 윤리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장학금: 학생자치기구 간부 등으로서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2. 기타 교내 장학금: 교내 사업부서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8조(복지장학금) 복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장학금: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2. 어의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부모)

다.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정

라.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학생(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환산 소득구간 기준) <개정 2025. 7. 30.>

3. SeoulTech 가족장학금: 2명 이상의 부모·형제·자매·남매가 본교(대학원, 박사과정 포함)에 동시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1학년 학부생 1명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개정 2023. 2. 2.>
4. 특별지원장학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가정환경이나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갑작스러운 가계곤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
5. SeoulTech 희망장학금: 저소득층 학생 중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6. 삭제 <개정 2024. 7. 1.>
7. 기타 교내 장학금: 교내 사업부서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2절 장학금 배정 및 지급

제9조(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1. 입학성적우수장학금(계속장학생 포함)
2. 법정장학금
3. 어의장학금
4. 봉사장학금
5. SeoulTech 가족장학금
6. 외국인장학금

②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인원은 제1항에 따른 우선선발을 제외한 인원 범위에

서 각 학과별·전공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장학금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각 부서에서 별도 지급하는 장학금은「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규정」 및 본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제3절 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성적기준 적용 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방학 중에 취득한 현장실습, 계절학기 및 디스커버리학기 성적은 제외한다.
2.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 후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없는 경우,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전 본교에서 취득한 최종학기의 성적을 적용한다.
3. 코업프로그램(장기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득한 학기성적으로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선택적 Pass/Fail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성적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과의 자체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생 선정 신청자와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은 장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한다.

③ 성적우수장학금의 학과 추천 대상자 중 타 장학금 수혜로 선발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명예 선발하여 장학수혜증명서상에만 기록한다.

④ 미등록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해당 학기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비감면장학금 중 제6조제1호, 제8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까지 장학금
2. 학비감면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⑤ ST근로장학생은 별지 제1호, ST인턴장학생은 별지 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장 교외장학금

제12조(교외장학금의 구분) 교외기관이 본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지자체가 직접 지원하거나 중·장기로 운영하는 사업에 수반되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2. 국가·지자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운영·출연하는 장학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가.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3. 기업, 기타 교외단체(개인 포함) 등이 지원하는 경우
   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체
   나. 법률에 의한 장학법인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학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등

제13조(교외장학생 인정기준) 교외장학생 선정은 교외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본교 장학생으로 인정한다.

1.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장학금을 기탁받은 대학이 본교의 관계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한 경우
2. 공익법인 장학단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모집하여 자체 선발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한 경우
3.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총장(학장)으로부터 자격을 갖춘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한 경우
4. 제12조제1호에 따라 사업비 교부기관의 집행 기준에 따라 교내 사업부서에서 기준을 정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 경우
5.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23. 2. 2.>

제14조(교외장학생 선정기준) 교외장학생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자격요건(지역, 문중, 성적 등)을 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선발한다.

2.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자격요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학업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C+)이상인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상 학비보조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2. 2.>
3. 제1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외기관이 정한 요건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불법·부당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적절성을 판단하여 기준을 재요청한다.
4.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특정 학생을 지정하여 선발·추천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확인하고 장학생으로 선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발·추천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장학금은 제외한다.
   가.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 방법 및 절차
   나.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지정한 학생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한 자료

제15조(교외장학생 선정절차) ① 총장은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의뢰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장학생 배정
   가. 대학, 학과·학부, 전공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학에 배정한다.
   나. 대학, 학과·학부, 전공 등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학별 수혜율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 졸업, 휴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인원을 보충할 때에는 해당 대학에 계속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학생 추천
   가. 학장은 지도교수·학과장·학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자격이 인정되는 학생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나. 총장은 이를 심사 확정하며 필요로 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추천한다.

3. 장학생 교체

가. 장학생 추천 시기는 일반장학생 선정 시기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장학생 선발이 끝난 후에 장학생 추천 의뢰가 있을 때에는 학사력에 따른 등록시기 전까지 선정하여 교체 추천한다.

나. 장학생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교체한다.

제16조(장학생 추천서 발급) 총장의 추천서는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총장에게 자격을 갖춘 학생을 추천 의뢰하였을 때 그 대상 학생에게 발급한다.

제17조(장학금 영수증 발급) ①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총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1.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총장에게 자격을 갖춘 학생을 추천 의뢰하였거나 공익법인 단체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 후 장학금을 장학단체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총장을 통하여 지급할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총장에게 장학금을 기부하여 총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할 경우

② 장학단체가 총장에게 장학대상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총장 명의의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에게는 추천서 및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8조(그 밖의 사항) ① 교외장학금은 재단법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 발전기금회계로 일괄 수입 처리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② 교외장학금 입·출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재단법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발전기금회계에 세입 처리한다.

③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금의 성적·이수학점 기준 적용 시 계절학기 및 디스커버리학기(방학 중 현장실습 포함) 성적·이수학점은 제외한다.

부칙 <제629호, 2021. 12.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호, 제6조제4호, 제6조제5호, 제6조제7호, 제8조제3호 지침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미 선정된 장학대상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297호, 2022. 8.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지침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미 선정된 장학대상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301호, 2022. 8.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3의 개정지침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미 선정된 장학대상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344호, 2023. 2.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호, 별표4의 개정지침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미 선정된 장학대상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353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0호 및 별표1, 별표2, 별표4의 개정지침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미 선정된 장학대상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369호, 2023. 7.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지침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미 선정된 장학대상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379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지침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미 선정된 장학대상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408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실천장학금 지원기준의 제3호 외국인장학금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미 선정된 장학대상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410호, 2024. 8.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52호, 2025. 7.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71호, 2026. 2. 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83호, 2026. 8.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외국인장학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3. 4. 18., 2023. 7. 17., 2024. 7. 1.>

창의장학금 지원기준(제5조 관련)

1. 국제교류장학금

수혜대상	교환학생프로그램, 복수학위프로그램 등 학술교류 협정에 의거 선발된 학생
지원성격	학비(수업료) 감면, 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
지원내역	* 학비(수업료) 감면: 100% * 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 체류비용 일부
성적기준	국제교류처 등 소관부서 자체기준
상세기준	국제교류처 등 소관부서 자체기준
지원범위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포함(단,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제외)
담당부서	* 학비(수업료): 학생처 * 생활비(학업보조비): 국제교류처 등
비 고	학비(수업료) 감면은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2. 삭제 <2024. 7. 1.>

3. 마일리지 장학금

<table>
<tr><td>수혜대상</td><td>교내 필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에 기여 또는 대학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한 학생</td></tr>
<tr><td>지원성격</td><td>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td></tr>
<tr><td>지원내역</td><td>1마일리지당 1,000원</td></tr>
<tr><td>성적기준</td><td>없음</td></tr>
<tr><td>상세기준</td><td>
<table>
<tr><th>항목</th><th>인정활동</th><th>마일리지 점수</th><th>실적인정방법</th></tr>
<tr><td>필수교육 이수</td><td>▷교내 부서 주관 필수교육 이수자
－성희롱 · 폭력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등</td><td>5마일리지</td><td>교육주관부서에서 이수자 명단을 학생처로 제출 후 마일리지 일괄부여</td></tr>
<tr><td>대학 - 지역사회 협력 기여</td><td>▷지역사회 협력 기여자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고자 노원구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
※ 재학 중 1회에 한함</td><td>30마일리지</td><td>학생이 학생처로 증빙서류 제출 후 선발자 마일리지 일괄부여</td></tr>
<tr><td>대학 재정 안정화 기여</td><td>▷대학 재정 안정화 기여자
－대상: 입학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 봉사장학금 수업료 전액면제 선발 학생
－지급기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로 국가장학금 I 유형 장학금을 선감면으로 수혜한 경우</td><td>50마일리지</td><td>학생처에서 대상자 선발 후 마일리지 일괄부여</td></tr>
</table>
</td></tr>
<tr><td>지원범위</td><td>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포함(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td></tr>
<tr><td>담당부서</td><td>학생처 및 교육 주관부서</td></tr>
<tr><td>비 고</td><td>*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마일리지 적립 점수는 10점(1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산부족시 '1순위 고학년', '2순위 신청금액 많은 학생' 순으로 우선선발</td></tr>
</table>

[별표 2] <개정 2023. 9. 14., 2024. 7. 1., 2025. 7. 30., 2026. 2. 4., 2026. 8. 3.>

실천장학금 지원기준(제6조 관련)

1. 입학성적우수장학금

<table>
<tr><td>수혜대상</td><td>신입학 전형 시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td></tr>
<tr><td>지원성격</td><td>학비(수업료) 감면</td></tr>
<tr><td>지원내역</td><td>상세기준에 표기</td></tr>
<tr><td>성적기준</td><td>상세기준의 전형별 · 선발유형별 내역 참조</td></tr>
<tr><td>상세기준</td><td>
1. 수시전형 입학생 대상 선발
<table>
<tr><th>공통기준</th><th>선발유형</th><th>선발인원</th><th>지원내역</th></tr>
<tr><td rowspan="11">▷최초합격자 및 최초선발자에 한함
▷입학성적 총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
▷선발인원 산정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선발인원은 장학금 지원내역의 감면비율이 높은 인원을 포함한 것임
(예시: '논술전형'의 경우 총 선발인원은 5%이며, 상위 1%까지 전액 지원, 상위 3%까지는 70% 지원, 나머지 인원을 30% 지원)
▷실기전형: 학생부 및 실기점수 50% 반영
▷실기전형 제외 전형: 최종단계 점수 반영
▷선발제외: 인공지능응용학과 2021~2022학년도 신입생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까지 유리한 지급 내역으로 지원하되, 총 선발인원 수는 유지 (단, 수업료 30% 수혜자의 경우 동점자 모두 선발)</td><td>▸고교추천전형</td><td>전형별
모집인원의 100%</td><td>수업료 전액
※1학기 지원</td></tr>
<tr><td rowspan="3">▸학교생활우수자전형
▸논술전형</td><td>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1%</td><td>수업료 전액
※1학기 지원</td></tr>
<tr><td>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3%</td><td>수업료 70%
※1학기 지원</td></tr>
<tr><td>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5%</td><td>수업료 30%
※1학기 지원</td></tr>
<tr><td rowspan="3">▸농어촌학생전형
▸평생학습자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실기전형</td><td>전형별
모집인원의 2%</td><td>수업료 전액
※1학기 지원</td></tr>
<tr><td>전형별
모집인원의 3%</td><td>수업료 70%
※1학기 지원</td></tr>
<tr><td>전형별
모집인원의 5%</td><td>수업료 30%
※1학기 지원</td></tr>
<tr><td rowspan="3">▸창의융합인재전형</td><td>전형별
모집인원의 10%</td><td>수업료 전액
※1학기 지원</td></tr>
<tr><td>전형별
모집인원의 20%</td><td>수업료 70%
※1학기 지원</td></tr>
<tr><td>전형별
모집인원의 100%</td><td>수업료 30%
※1학기 지원</td></tr>
</table>
2. 정시전형 입학생 대상 선발
<table>
<tr><th>공통기준</th><th>선발유형</th><th>선발인원</th><th>지원내역</th></tr>
<tr><td rowspan="2">▷최초합격자 및 최초선발자에 한함
▷입학성적 총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
▷모집군 간 대학별/모집단위별 통합 순위 산정방법
−각 모집단위별 최종단계 전형 총점 적용 (반영 총점: 1,000점)
−수시모집 이월 전형 제외 (평생학습자 전형, 학생부교과 전형 등)
− 인문 · 자연 계열 통합 산정</td><td>▸단과대학 수석</td><td>단과대학별 1위
※다만, 공과대학은 2위까지 인정 (총 8명)</td><td>수업료 전액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지원</td></tr>
<tr><td>▸학과 성적우수A</td><td>학과(전공) 모집인원의 8%
※학과(전공)별 최소 1명 배정</td><td>수업료 전액
※1년(2개 학기) 지원</td></tr>
</table>
</td></tr>
</table>

▷선발인원 산정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선발인원은 장학금 지원내역의 감면 비율이 높은 인원을 포함한 것임 (예시: '학과 성적우수B'의 경우 총 선발 인원은 20%이며, 상위 8%까지 1년간 전액 지원, 나머지 인원은 1학기 전액 지원) ▷선발제외: 인공지능응용학과 2021~2022 학년도 신입생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까지 유리한 지급 내역으로 지원하되, 총 선발인원 수는 유지 ▷계속장학금(1, 4, 5년간) 지급조건 매 직전학기 하단성적 이상: 취득학점 15 / 평점평균 3.0 / F학점(또는 U(불합격)) 없음	▸학과 성적우수B	학과(전공) 모집인원의 20%	수업료 전액 ※1학기 지원

3.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 입학생 대상 선발

공통기준	선발 유형	구분	지원기준					지원 내역
			영역명				합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최초선발자에 한함 ▷선발인원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 우리 대학 자체 기준인 변환표준점수 성적순으로 선발 (1,000점 만점) −최우수 선발인원 자연계열 2명 / 인문계열 1명 / 예체능계열 1명 −우수 선발인원 자연계열 30명 / 인문계열 10명 / 예체능계열 10명 ▷계열은 모집요강 명시 기준으로 구분 ▷선발제외: 인공지능응용학과 2021~2022학년도 신입생 ▷계속장학금(4, 5년간) 지급조건 매 직전학기 하단성적 이상: 취득학점 15 / 평점평균 3.75 / F학점(또는 U(불합격)) 없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최우수	▸자연계열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과목평균 2등급이내	5등급 이내	수업료 전액 생활관비 전액 생활비(30만원)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지원
		▸인문계열 (문예창작학과 제외)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과목평균 2등급이내	5등급 이내	
		▸문예창작학과 ▸스포츠과학과	1등급 이내	1등급 이내	−	2과목평균 1등급이내	−	
		▸조형대학	1등급 이내	1등급 이내	1등급 이내	−	−	
			1등급 이내	1등급 이내	−	2과목평균 1등급이내	−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우수	▸자연계열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과목평균 2등급이내	6등급 이내	수업료 전액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지원
		▸인문계열 (문예창작학과 제외)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과목평균 2등급이내	6등급 이내	
		▸문예창작학과 ▸스포츠과학과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	2과목평균 2등급이내	4등급 이내	
		▸조형대학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	5등급 이내	
			2등급 이내	2등급 이내	−	2과목평균 2등급이내	5등급 이내	

4. AIS 장학금

장학명	선발기준	지원내역	계속장학금(4년간) 지급조건
AIS(Artificial Intelligence Seoultech) 장학금	2021~ 2022학년도 인공지능응용학과 정시 및 수시 신입학생 전원	수업료 전액 ※4년(8학기)	매 직전학기 하단성적 이상: 취득학점 15 / 평점평균 3.0 / F학점(또는 U(불합격)) 없음

지원범위	당해연도 신입학 학생
담당부서	학생처
비 고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2. 성적우수장학금

수혜대상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지원성격	학비(수업료) 감면
지원내역	수업료 전액, 수업료 50%, 수업료 20%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단, 미래융합대학은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F학점(또는 U(불합격))이 없어야 함
선발기준	성적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학과에서 각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른 자체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지원범위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내국인 재학생
담당부서	학생처 및 각 학과(전공)
비 고	*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 장학생 선발 대상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은 학과 자체 선정기준 수립 및 장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 * 명예선발 ○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 선발 대상이지만 타 장학금 수혜로 학과 추천 명단에서 다음 순위자로 양도되는 경우 ○ 증명기준: 장학수혜증명서 상에 장학명은 "성적우수(명예선발)"로 하며, 지원금액은 없기에 수혜내역의 금액은 모두 '0원'으로 표기 ○ 통계기준: 수혜금액이 없으므로 장학 통계에 반영하지 않음

3. 외국인장학금

<table>
<tr><td>수혜대상</td><td>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중 입학성적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td></tr>
<tr><td>지원성격</td><td>학비(수업료) 감면 및 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td></tr>
<tr><td>지원내역</td><td>상세기준에 표기</td></tr>
<tr><td>성적기준</td><td>상세기준에 표기</td></tr>
<tr><td>상세기준</td><td>

1. 신 · 편입생 입학성적우수장학금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선발기준</th><th rowspan="2">지원내역</th></tr>
<tr><th colspan="2">공인 어학성적 점수
(해당 점수 한 가지)</th><th>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th></tr>
<tr><td rowspan="2">A등급</td><td>한국어</td><td>TOPIK 6등급</td><td rowspan="2">A</td><td rowspan="2">수업료 전액
생활관비 전액</td></tr>
<tr><td>영어</td><td>TOEFL iBT 100(5) 이상
<삭제>
IELTS Band 7.0 이상
New TEPS 345 이상</td></tr>
<tr><td rowspan="2">B등급</td><td>한국어</td><td>TOPIK 5등급 이상</td><td rowspan="2">A</td><td rowspan="2">수업료 전액</td></tr>
<tr><td>영어</td><td>TOEFL iBT 90(4.5) 이상
<삭제>
IELTS Band 6.5 이상
New TEPS 304 이상</td></tr>
<tr><td rowspan="2">C등급</td><td>한국어</td><td>TOPIK 4등급 이상</td><td rowspan="2">A</td><td rowspan="2">수업료 70%</td></tr>
<tr><td>영어</td><td>TOEFL iBT 80(4) 이상
<삭제>
IELTS Band 6.0 이상
New TEPS 266 이상</td></tr>
<tr><td rowspan="2">B등급</td><td>한국어</td><td>TOPIK 5등급 이상</td><td rowspan="2">B</td><td rowspan="2">수업료 50%</td></tr>
<tr><td>영어</td><td>TOEFL iBT 90(4.5) 이상
<삭제>
IELTS Band 6.5 이상
New TEPS 304 이상</td></tr>
<tr><td rowspan="2">C등급</td><td>한국어</td><td>TOPIK 4등급 이상</td><td rowspan="2">B</td><td rowspan="2">수업료 50%</td></tr>
<tr><td>영어</td><td>TOEFL iBT 80(4) 이상
<삭제>
IELTS Band 6.0 이상
New TEPS 266 이상</td></tr>
</table>

2.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공인 어학성적 점수
(해당 점수 한 가지)</th><th colspan="2">직전학기 성적기준</th><th rowspan="2">지원내역</th></tr>
<tr><th>공통</th><th>평점평균</th></tr>
<tr><td>A등급</td><td rowspan="3">TOPIK 4등급 이상
TOEFL iBT 80(4) 이상
<삭제>
IELTS Band 6.0 이상
New TEPS 266 이상</td><td rowspan="3">-취득학점 12학점 이상
-F학점(또는 U(불합격))
이 없는 경우</td><td>4.0 이상</td><td>수업료 전액
생활관비 전액</td></tr>
<tr><td>B등급</td><td>3.8 이상</td><td>수업료 50%</td></tr>
<tr><td>C등급</td><td>3.5 이상</td><td>수업료 30%</td></tr>
</table>

3. 신입생 STEM 인재장학금(STEM Leader Scholarship)

<table>
<tr><th colspan="2">선발기준</th><th rowspan="2">지원내역</th></tr>
<tr><th>공인 어학성적 점수</th><th>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th></tr>
<tr><td>(한국어) TOPIK 3등급 이상</td><td>A</td><td>수업료 전액
생활관비 전액
※1년(2개 학기) 지원</td></tr>
</table>

</td></tr>
</table>

지원범위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외국인 특별전형 (신)(편)입학생 및 재학생
담당부서	학생처 및 국제교류처
비 고	*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 어학성적 점수' 중 영어성적의 경우 영어트랙과정 전공자에 한함 * 2024학년도 이전 입학한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 지침 성적기준 및 지원내역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 생활관비 지원 시 식비 및 방학기간 생활관비는 제외함 * 신입생 STEM 인재장학금 중 생활관비는 별도 재원으로 지급함

4. 학생군사교육장학금

수혜대상	학군사관후보생 중 계절학기 입영훈련에 참가하는 학생
지원성격	학비(수업료) 감면
지원내역	100%
성적기준	없음
상세기준	계절학기(동계 및 하계)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학점이 인정되는 입영훈련 참여자
지원범위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포함(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
담당부서	학생처
비 고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5. 미래호국장학금

수혜대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장학금을 신청한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성격	학비(수업료) 감면
지원내역	50%
성적기준	없음
상세기준	없음
지원범위	공군학군사관후보생 전원
담당부서	학생처
비 고	*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Ⅰ유형 장학금은 매학기마다 신청

6. ST근로장학금

<table>
<tr><td>수혜대상</td><td>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하여 교내 부서에서 근무하며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td></tr>
<tr><td>지원성격</td><td>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td></tr>
<tr><td>지원내역</td><td>장학위원회 확정금액</td></tr>
<tr><td>성적기준</td><td>없음</td></tr>
<tr><td>상세기준</td><td>
<table>
<tr><th>선정기준</th><th>근로시간</th><th>지급단가</th></tr>
<tr><td>교내 부서에서 일정 시간 근로 활동을 하는 학생</td><td>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 근로시간</td><td>시간제 단가</td></tr>
</table>
</td></tr>
<tr><td>지원범위</td><td>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포함(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td></tr>
<tr><td>담당부서</td><td>학생처 및 각 관리부서(학과 포함)</td></tr>
<tr><td>비 고</td><td>*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ST근로는 같은 부서에서 3학기까지만 계속 근무 가능
* ST근로 장학금 지급 단가가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최저임금 고시금액보다 적으면 이듬해 1, 2월의 ST근로장학금 단가금액을 최저임금 고시금액으로 적용하여 지급</td></tr>
</table>

7. ST인턴장학금

<table>
<tr><td>수혜대상</td><td>교내 부서에서 전공분야 또는 전문분야 인턴으로 참여한 학생</td></tr>
<tr><td>지원성격</td><td>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td></tr>
<tr><td>지원내역</td><td>장학위원회 확정금액</td></tr>
<tr><td>성적기준</td><td>없음</td></tr>
<tr><td>상세기준</td><td>
<table>
<tr><th>선정기준</th><th>근무시간</th><th>지급단가</th></tr>
<tr><td>교내 부서에서 일정 시간 ST인턴 활동을 하는 학생</td><td>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 근무시간</td><td>시간제 단가</td></tr>
</table>
</td></tr>
<tr><td>지원범위</td><td>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포함(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td></tr>
<tr><td>담당부서</td><td>학생처 및 각 관리부서(학과 포함)</td></tr>
<tr><td>비 고</td><td>*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ST인턴은 같은 부서에서 4학기까지만 계속 근무 가능
* ST인턴 장학금 지급 단가가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최저임금 고시 금액보다 적으면 이듬해 1, 2월의 ST인턴장학금 단가금액을 최저임금 고시 금액으로 적용하여 지급
* 학생처로 1학기에 1회 이상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ST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td></tr>
</table>

8. ST튜터장학금

<table>
<tr><td>수혜대상</td><td>타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튜터로 선정되어 튜터링 활동을 하는 학생</td></tr>
<tr><td>지원성격</td><td>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td></tr>
<tr><td>지원내역</td><td>장학위원회 확정금액</td></tr>
<tr><td>성적기준</td><td>교내 사업부서 자체 선발기준</td></tr>
<tr><td>상세기준</td><td>
<table>
<tr><th>선정기준</th><th>활동시간</th><th>지급단가</th></tr>
<tr><td>타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선정되어 튜터 활동을 하는 학생</td><td>최소 월 32시간</td><td>월정액</td></tr>
</table>
</td></tr>
<tr><td>지원범위</td><td>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포함(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td></tr>
<tr><td>담당부서</td><td>학생처 및 각 관리부서(학과 포함)</td></tr>
<tr><td>비 고</td><td>*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장학금 지급 단가(월정액)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
* 활동시간 미달 시 장학금 지급단가(월정액)는 조정하여 지급
※조정방법: 월정액 × (실제활동시간/32시간)</td></tr>
</table>

9. 공로장학금

<table>
<tr><td>수혜대상</td><td>기술 · 체육 · 예능 · 외국어 분야 등의 국내외 각종 대회 및 전시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떨쳤거나 그 밖에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td></tr>
<tr><td>지원성격</td><td>학비(수업료) 감면 및 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td></tr>
<tr><td>지원내역</td><td>상세기준에 표기</td></tr>
<tr><td>성적기준</td><td>없음</td></tr>
<tr><td>상세기준</td><td>
1. 대회 수상자
<table>
<tr><th>구분</th><th>선정기준</th><th>제출서류</th><th>지원내역</th></tr>
<tr><td rowspan="3">국내</td><td>장관 이상 또는 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인이 날인된 상장을 수상한 학생</td><td rowspan="4">상장사본 및 신청서</td><td rowspan="4">-1등: 100만원
-2등: 60만원
-3등: 40만원
※단체수상: 해당 등수 장학금의 50%를 개인별로 각각 지급
※최대 수혜 가능 횟수: 3회</td></tr>
<tr><td>주요 일간지, 주요 방송사가 주최하는 기술 · 체육 · 예능 · 외국어 분야 등의 대회에서 주최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상장을 수상한 학생</td></tr>
<tr><td>수상 내역이 주요 일간지나 주요 방송사를 통해 보도된 학생
※기사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 학생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대상자로 인정함</td></tr>
<tr><td>국외</td><td>세계적인 대회(각 분야를 대표하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수상하였거나, 국내외 신문 또는 방송에 수상 내역이 보도된 학생</td></tr>
</table>
※ 주요 일간지는 2017년도 한국ABC협회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 10만 부 이상 발행된 종합일간지 10개 사와 경제지 2개 사를 지칭함
-주요 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주요 방송사: EBS, KBS, MBC, SBS
2. 고시 합격자
<table>
<tr><th>구분</th><th>선정기준</th><th>제출서류</th><th>지원내역</th></tr>
<tr><td>국가공무원 5급(행정, 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td><td rowspan="2">1차 합격 또는 최종 합격</td><td rowspan="2">합격증 또는 합격확인서</td><td rowspan="2">-최종 합격: 수업료 전액(※ 졸업 시까지)
-1차 합격: 200만원</td></tr>
<tr><td>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td></tr>
</table>
3. 특정 분야 자격취득자
<table>
<tr><th>구분</th><th>선정기준</th><th>제출서류</th><th>지원내역</th></tr>
<tr><td>공인회계사</td><td rowspan="7">1차 합격 혹은 최종 합격</td><td rowspan="7">합격확인서</td><td rowspan="7">100만원
※1차 합격 혹은 최종 합격 중 한 번만 지급
※자격별 중복수혜불가</td></tr>
<tr><td>변리사</td></tr>
<tr><td>세무사</td></tr>
<tr><td>감정평가사</td></tr>
<tr><td>법무사</td></tr>
<tr><td>노무사</td></tr>
<tr><td>관세사</td></tr>
</table>
</td></tr>
<tr><td>지원범위</td><td>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포함(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td></tr>
<tr><td>담당부서</td><td>학생처</td></tr>
<tr><td>비 고</td><td>*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단, '고시 합격자' 최종 합격 장학금은 타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공로장학금 대상자 선정</td></tr>
</table>

10. 삭제 <2023. 4. 18.>

11. 총장장학금

수혜대상	모범적인 학생이나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중 학생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그 공로를 인정한 학생
지원범위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포함(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
지원성격	학비(수업료) 감면 혹은 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
성적기준	없음
상세기준	총장이 정함
지원내역	총장이 정함
담당부서	학생처
비 고	학비(수업료) 감면은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12. 현장실습장학금

수혜대상	단기현장실습 및 장기현장실습 (Co-op) 프로그램, 해외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지원범위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포함(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
지원성격	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
성적기준	취업진로본부 등 소관부서 자체 선발기준
상세기준	취업진로본부 등 소관부서 자체 선발기준
지원내역	소관부서 자체 지원계획에 따름
담당부서	학생처 및 취업진로본부
비 고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별표 3] <개정 2024. 7. 1., 2024. 8. 1., 2025. 7. 30., 2026. 2. 4., 2026. 8. 3.>

윤리장학금 지원기준(제7조 관련)

1. 봉사장학금

<table>
<tr><td>수혜대상</td><td>학생자치기구 간부 등으로서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td></tr>
<tr><td>지원성격</td><td>학비(수업료) 감면</td></tr>
<tr><td>지원내역</td><td>상세기준에 표기</td></tr>
<tr><td>성적기준</td><td>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td></tr>
<tr><td>상세기준</td><td>
<table>
<tr><th colspan="2" rowspan="3">기구명</th><th colspan="6">지급 구분</th></tr>
<tr><th colspan="2">수업료 전액 면제</th><th colspan="2">수업료 70% 면제</th><th colspan="2">수업료 50% 면제</th></tr>
<tr><th>직위</th><th>인원</th><th>직위</th><th>인원</th><th>직위</th><th>인원</th></tr>
<tr><td colspan="2">총학생회</td><td>회장단</td><td>3</td><td>중앙집행국 집행부/상설·특별 자치기구 대표자</td><td>24</td><td>상설·특별 자치기구 위원</td><td>11</td></tr>
<tr><td colspan="2">동아리연합회</td><td>(부)회장</td><td>2</td><td></td><td></td><td>부장급 이상</td><td>10</td></tr>
<tr><td colspan="2">학생복지위원회</td><td>(부)회장</td><td>2</td><td></td><td></td><td>부장급 이상</td><td>6</td></tr>
<tr><td colspan="2">육군 학군단</td><td>대대장(4학년)
중대장(3학년)
작전장교(3학년)</td><td>5</td><td>참모/소대장
(3,4학년)</td><td>6</td><td></td><td></td></tr>
<tr><td colspan="2">공군 학군단</td><td>대대장/중대장</td><td>5</td><td>참모/소대장</td><td>6</td><td></td><td></td></tr>
<tr><td rowspan="10">단과대학 학생회</td><td>공과대학</td><td>(부)회장</td><td>2</td><td></td><td></td><td>부장급 이상</td><td>6</td></tr>
<tr><td>미래융합대학</td><td>(부)회장</td><td>2</td><td></td><td></td><td>부장급 이상</td><td>6</td></tr>
<tr><td>정보통신대학</td><td>(부)회장</td><td>2</td><td></td><td></td><td>부장급 이상</td><td>6</td></tr>
<tr><td>에너지바이오대학</td><td>(부)회장</td><td>2</td><td></td><td></td><td>부장급 이상</td><td>6</td></tr>
<tr><td>조형대학</td><td>(부)회장</td><td>2</td><td></td><td></td><td>부장급 이상</td><td>6</td></tr>
<tr><td>인문사회대학</td><td>(부)회장</td><td>2</td><td></td><td></td><td>부장급 이상</td><td>6</td></tr>
<tr><td>기술경영융합대학</td><td>(부)회장</td><td>2</td><td></td><td></td><td>부장급 이상</td><td>6</td></tr>
<tr><td>창의융합대학</td><td>(부)회장</td><td>2</td><td></td><td></td><td>부장급 이상</td><td>6</td></tr>
<tr><td>국제대학</td><td>(부)회장</td><td>2</td><td></td><td></td><td>부장급 이상</td><td>6</td></tr>
<tr><td colspan="2">학과 학생회</td><td></td><td></td><td></td><td></td><td>(부)회장</td><td>94</td></tr>
<tr><td colspan="2">신문방송사</td><td>편집장/국장/부장</td><td>10</td><td>차장</td><td>11</td><td>정기자</td><td>11</td></tr>
<tr><td colspan="2">홍보대사(어우미)</td><td>(부)회장</td><td>2</td><td>홍보대사</td><td>23</td><td></td><td></td></tr>
</table>
※ 직전학기 봉사실적이 있으며 해당 직책을 한 학기 동안 유지한 학생에 한함
※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장학복지팀에 제출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심의·선발 (다만, 외국인은 제외한다)
</td></tr>
</table>

<table>
<tr><td>지원범위</td><td>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포함(단, 2회에 한함)</td></tr>
<tr><td>담당부서</td><td>학생처 및 각 기구 관리부서(학과)</td></tr>
<tr><td>비 고</td><td>* 타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 '학과 학생회'의 봉사장학금은 학부(과), 전공(프로그램)별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을 각 1명씩 지원(계약학과 제외)
* '학과 학생회' 배정 학부(과)와 전공, 프로그램
<table>
<tr><td>공과대학</td><td>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기계시스템공학부 미래자동차전공,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td></tr>
<tr><td>정보통신대학</td><td>전기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과</td></tr>
<tr><td>에너지바이오대학</td><td>화공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정밀화학과, 안경광학과, 스포츠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td></tr>
<tr><td>조형대학</td><td>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도예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td></tr>
<tr><td>인문사회대학</td><td>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 문예창작학과</td></tr>
<tr><td>기술경영융합대학</td><td>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산업공학과 ITM전공, MSDE학과,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경영학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td></tr>
<tr><td>미래융합대학</td><td>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헬스피트니스학과, 문화예술학과, 영어과, 벤처경영학과, 정보통신융합공학과</td></tr>
<tr><td>창의융합대학</td><td>인공지능응용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td></tr>
<tr><td>국제대학</td><td>글로벌자유전공학부, 글로벌한국어문화학과, AI 미디어학과, 글로벌IT컨버전스학과</td></tr>
<tr><td>교양대학</td><td>ST자유전공학부</td></tr>
</table>
</td></tr>
</table>

[별표 4] <개정 2023. 4. 18., 2024. 8. 1., 2025. 7. 30., 2026. 8. 3.>

복지장학금 지원기준(제8조 관련)

1. 법정장학금

<table>
<tr><td>수혜대상</td><td>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학생</td></tr>
<tr><td>지원성격</td><td>학비(수업료) 감면</td></tr>
<tr><td>지원내역</td><td>100%</td></tr>
<tr><td>성적기준</td><td>상세기준에 표기</td></tr>
<tr><td>상세기준</td><td>
1. 국가유공자
<table>
<tr><td>근거법령</td><td>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td></tr>
<tr><td>대 상</td><td>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td></tr>
<tr><td>제출서류</td><td>본인,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자녀, (외)(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td></tr>
<tr><td>성적기준</td><td>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신·편입 학기: 성적기준 없음
※재입학 학기: 제적·자퇴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td></tr>
<tr><td>특이사항</td><td>-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 수업연한 제한 없음, 성적기준 없음
- 유공자 (외)(손)자녀: 수업연한 범위만 지원(계절학기 및 디스커버리학기 지원 제외), 이미 면제받은 수혜받은 학기 수 포함하여 연한 (8회) 적용</td></tr>
</table>
2. 북한이탈주민
<table>
<tr><td>근거법령</td><td>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통일부예규)</td></tr>
<tr><td>대 상</td><td>북한이탈주민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td></tr>
<tr><td>제출서류</td><td>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td></tr>
<tr><td>성적기준</td><td>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신·편입 학기: 성적기준 없음
※다만, 직전학기 성적은 2회(2학기) 연속 백분율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미만인 경우만 해당 학기 장학금 미지급</td></tr>
<tr><td>특이사항</td><td>-(삭제)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 지원(단, 수업연한이 5년제인 학과는 10학기 지원)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td></tr>
</table>
</td></tr>
<tr><td>지원범위</td><td>수업연한 범위 내 학생(초과학기생 미포함)</td></tr>
<tr><td>담당부서</td><td>학생처</td></tr>
<tr><td>비 고</td><td>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td></tr>
</table>

2. 어의장학금

<table>
<tr><td>수혜대상</td><td>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td></tr>
<tr><td>지원성격</td><td>학비(수업료) 감면</td></tr>
<tr><td>지원내역</td><td>A등급: 100%, B등급: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비율)</td></tr>
<tr><td>성적기준</td><td>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td></tr>
<tr><td>상세기준</td><td>
<table>
<tr><th>구분</th><th>선정기준</th></tr>
<tr><td rowspan="4">A등급</td><td>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td></tr>
<tr><td>기초~소득 5구간(학자금지원구간, 구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자)</td></tr>
<tr><td>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정</td></tr>
<tr><td>본인 혹은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등급제의 3급 이상 장애인)</td></tr>
<tr><td>B등급</td><td>소득 6구간~9구간(학자금지원구간, 구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자)</td></tr>
</table>
</td></tr>
<tr><td>지원범위</td><td>수업연한 범위 내 학생(초과학기생 미포함)</td></tr>
<tr><td>담당부서</td><td>학생처</td></tr>
<tr><td>비 고</td><td>*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 예산부족 시 '1순위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분위)이 낮은 학생', '2순위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3순위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순으로 우선선발
* A등급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동 기준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학자금지원구간) 학생을 제외하고, 차상위계층~5구간의 학생이 국가장학금 I유형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수업료의 50%만 면제함</td></tr>
</table>

3. SeoulTech 가족장학금

수혜대상	부부 · 부모자녀 · 형제자매가 본교(대학원, 박사과정 포함)에 동시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1학년 학부생 1명
지원성격	학비(수업료) 감면
지원내역	50%
성적기준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단, 첫 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담당부서	학생처
비 고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수혜 횟수는 최대 2회에 한함)

4. 특별지원장학금

수혜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을 겪는 학생
지원성격	학비(수업료) 감면 혹은 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
지원내역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성적기준	없음
상세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총장이 선발하거나, 단과대학장이나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총장이 선발
지원범위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포함(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
담당부서	학생처
비 고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5. SeoulTech 희망장학금

수혜대상	저소득층 학생 중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학생
지원성격	생활비(학업보조비) 지원
지원내역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 90점(평점평균 3.63) 이상
상세기준	기초~소득 5구간(학자금 지원구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자)
지원범위	수업연한 범위 내 학생(초과학기생 미포함)
담당부서	학생처
비 고	*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매 학기 지급 여부, 지급금액, 지급 횟수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삭제 <2024. 7. 1.>

[별지 제1호서식]

제 0000 - 000000호

ST근로 경력 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번	
	대학명			학과명		

경력사항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근무부서
		부터	까지		
용 도					

상기인은 교내장학사업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위와 같이 활동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별지 제2호서식]

제 0000 - 000000호

ST인턴 경력 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번	
	대학명			학과명		

경력사항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근무부서
		부터	까지		
	OOO인턴				

활동내역	
용 도	

상기인은 위와 같이 활동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2. 2.>

제 0000 - 000000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 불가 사유서

학생정보	수혜학기		기구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번	
	대학명		학과명		연락처	
신청불가 사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관리 지침 제7조 관련 [별표 3]의 봉사장학금 지원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 불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